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  
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4월 24일

- 회부일자 : 1995년 4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95. 4. 2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송 원 호 )

가.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법 및 등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을 등 법령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규정 요금만 주고받는 풍토를 정착시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코저 함

나. 주요골자

- 현 조례에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율증 매매 및 교환시의 거래가액이 8억원 이상일때 수수료 최고한도액 「 3,000천원 이내 」를 삭제하고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의 거래가액이 4억원 이상일때 수수료 최고한도액 「 1,500천원이내 」를 삭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이 「분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퍼센트」로 표기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1항 개정으로 부동산 수수료 한도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교환의 경우 0.15~0.9%", "임대차의 경우 0.15~0.8%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거래 가액이 매매교환시 20억원과 임대차시 8억원을 초과할 경우 충청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동법 시행규칙 수수료 범위내에서 정하도록한 규정에 위배되어 매매교환 8억원 이상일때와 임대차 4억원 이상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며,
- 매매교환 8억원 미만과 임대차 4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 한도액 존치는 동법시행규칙에 위배됨 없이 소액 거래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수수료율 표기방법을 분수로 표기하던 것을 퍼센트 표기로의 개정은 수치인식이 빠르며 명료한 표기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7인 만장일치)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